#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11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김교흥・이훈기・박선원

소병훈・윤건영・강준현

조승래 • 문진석 • 유동수

이해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공직선거법」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. 비슷한 취지로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민투표법」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 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 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, 수사 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.

이에,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「공직선거법」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(안 제63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3조(공소시효) 이 법 제49조, 제50조, 제51조, 제52조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. 다만,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63조(공소시효) 이 법 제49조,
	제50조, 제51조, 제52조에 규정
	된 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을
	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. 다만,
	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
	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
	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
	기간은 3년으로 한다.